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프라미스대부

2. 조치일 : 2022. 11. 25.

3. 조치내용

대상	내 용
기관	개선 1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⑴ 채권추심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미흡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31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의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별로 1일 2회를 초과하여 전화·문자메시지·방문 등으로 채무자를 접촉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자체 운영 중인 채권추심관리 전산시스템상 추심횟수가 산정되지 않아 추심업무담당자가 업무착오로 채권별 1일 2회를 초과하여 채무자를 접촉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추심업무담당자의 채권별 1일 채무자 접촉 누적 횟수를 관리하고, 채권별로 1일 2회 초과하여 채무자를 접촉하려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서 차단되게 하는 등 채권추심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